

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
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6. 9. 12.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1996년 8월 20일
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:1996년 8월 21일
- 다. 상정일자:제4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
(’96. 9. 12.)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제안설명자:기획예산과장 이은규

가. 개정이유

○마포구의 직제개편으로 불합리한 조문을
정리하고 운영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
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개정일자

○직제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된 세무1과장
을 세무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원중 결원이
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
정함(안 제3조).

○위원의 해촉사유를 정함(안 제5조).

○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던 것
을 부결된 것으로 보도록 정함(안 제6
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관수)

○동 개정조례안은 ’95. 3. 14. 서울특별
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
세무1과가 세무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고,
동 위원회 운영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보
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
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질의요지(정만직 위원):구의원이 구청
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시에는 가급적
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
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?

○답변요지(이은규 기획예산과장):구청 각
위원회 위원 위촉시 구의원을 포함할
경우 구의회사무국에 의원 추천을 요청
한 후, 구의회사무국에서 추천한 의원을
위촉하고 있음.

○질의요지(정만직 위원):현재의 구청 각
위원회 위원을 재개편 구성하는 것이
바람직하지 않은가?

○답변요지(이은규 기획예산과장):본 개정
조례안에 위원의 해촉근거를 마련하기
위한 해촉사유를 정하고 있음.

○질의요지(이인구 위원):재정계획심의위원
회 위원은 10명으로 정해져 있으며, 위
원장은 당연직인가?

○답변요지(이은규 기획예산과장):본 위원
회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되며, 위원
장, 부위원장은 당연직임.

○질의요지(이인구 위원):재정계획심의위원
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구의
원 중에서 위촉해도 되지 않은가?

○답변요지(이은규 기획예산과장):재정계획
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하는
위원회로서 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
총무국장이 당연직이 되어 각구 광
통사항임.

5. 토론요지:없음

6. 심사결과: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없음

8. 기타사항: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
조례(안)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98 |
|----------|----|

제출년월일 : 1996. 8. .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○마포구의 직제개편으로 불합리한 조문을
정리하고 운영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보
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
함.

2. 주요일자

○직제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된 세무1과장
을 세무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원중 결원
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
임기를 정함(안 제3조).

○위원의 해촉사유를 정함(안 제5조).

○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던 것
을 부결된 것으로 보도록 정함(안 제6
조).

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(1995. 12. 29. 법률제5069호)
제15조

- 서울특별시마포구직제규칙(1995. 01. 11.
규칙제221호)제12조

- 4. 개정조례(안):따로붙임.
- 5. 예산조치필요성:필요없음
 ※따로붙임: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3항중 “세무1과장”을 “세무관리과장”으로 하고,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임기

로 한다.
 제5조 내지 제12조를 제6조 내지 제13조로 각각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중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
2. 위원이 사망, 질병,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6조(중전의 제5조) 제3항중 “위원장이 결정한다”를 “부결된 것으로 본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제3조(구성) ①~②(생략) ③위원은 재무국장, 시민국장, 도시정비국장, 건설국장, 감사실장, 총무과장, 재무과장, <u>세무1과장</u> ,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, 지역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 (신설) | 제3조(구성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 <u>세무관리과장</u> ,..... |
| 제5조(회의) ①~②(생략)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| 제5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중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 1. 위원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. 2. 위원이 사망, 질병,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 |
| 제6조~제12조 (생략) | 제6조(회의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 <u>부결된 것으로 본다</u> . 제7조~제13조(현행 제6조~제12조와 같음) |

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 1996. 9. 13.
 총무재무위원회
 1. 심사경과
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1996년 9월 9일 마

포구청장 제출
 나. 회부일자:1996년 9월 10일
 다. 상정일자:제4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('96. 9. 13.)상정, 심사, 의결
 2. 제안설명의 요지
제안설명자:재무과장 조병하